

# 파산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권리 ②



오시정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 I. 머리말

파산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지게 된 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변제는 무효가 되거나 후에 파산관재인에 의해 부인됨으로써 결국 변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파산절차가 개시됐다고 해서 그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모두 파산절차에 따라서만 행사할 수 있게 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반할 수가 있고

나아가 원활한 파산절차의 수행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도 행사할 수 있는 예외로서 상계권, 보증인 등으로부터의 회수권, 환취권, 별제권 및 재단채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행사할 수 있는 위 권리 중 상계권과 보증인 등으로부터의 회수권 및 환취권에 대하여는 이미 앞 호에 게재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별제권과 재단채권의 행사요건과 행사방법 등에 대해서만 알아보기로 한다.

## II. 별제권

### 1. 별제권의 의의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으로부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를 말한다. 담보물권은 채무자의 경제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담보물권설정자(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파산해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별제권은 담보물권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본래적인 효력으로 『파산법』이 특별히 창설한 권리가 아니다.

별제권을 가지는 자는 동시에 파산채권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별제권은 원래 파산재단소속 특정의 재산에 대한 담보물권의 효력이므로 파산채권자가 재단 이외의 재산상에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별제권자로 되지 않는다(다만 채무자의 자유재산상에 담보물권을 가지는 파산채권자는 준별제권자로 되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된다). 반면에 파산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재단소속의 재산상에 담보물권을 가지는 자(예를 들면 파산자가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 물상보증을 한 경우)는 역시 별제권자로 된다.

별제권은 재단소속의 특정 재산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인 점에서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인 재단채권과 다르다. 재단채권은 별제권자에 대하여 변제한 후의 잔여 파산재단에서 변제된다. 또한 별제권은 특정재산의 금전적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취득하는 권리인 점에서, 특정의 재산 그 자체를 또는 그 사용가치를 되찾는 권리인 환취권과 구별된다.

### 2. 별제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

#### (1) 담보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채회파 411). 또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가등기담보권자에게도 별제권이 인정된다.

#### (2) 양도담보권

양도담보권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양도담보설정자가 파산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를 환취권자로 볼 것인지 별제권자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릴 수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상으로는 양도담보권이 가등기담보권과 함께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고 있는 점(채회파 141①)

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및 『국세기본법』은 양도담보를 일종의 담보물권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도 양도담보재산으로부터의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는 환취권자가 아니라 별제권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주택임차인과 상가건물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상가건물(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채회파 415①③).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상가건물(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채회파 415②③).

그런데 위 주택임차인과 상가건물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별제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별제권으로 보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권리의 실행이 가능한 반면 별제권이 아니라고 보면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권리의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생긴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 규정만을 대상으로 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상가건물(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별제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 규정이 별제권의 장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별제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별제권의 행사

(1) 행사방법

가) 별제권자의 직접실행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된다(채회파 412). 즉 별제권은 별제권의 기초인 담보물권에 인정되는 권리실행방법에 의한다. 예컨대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는 동산·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채권질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질채권의 직접청구(민 354), 상사질권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질(상 59) 등의 방법으로 행사된다. 또 가등기담보권에서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이하에 정해진 방법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피담보채권이 파산채권인 때는 기한부채권이어도 파산선고와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채회파 425) 바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파산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 그 피담보채권은 파산채권

이 아니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관재인과의 사이에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는 한,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양도담보에서 귀속청산형의 경우, 목적물의 가격을 평가해 그것이 피담보채권액보다 클 때는 그 차액(청산금)의 지급과 상환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처분청산형의 경우에는 바로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지만, 그 후에 목적물을 처분해 차액이 있으면 그것을 파산재단에 반환해야 한다.

별제권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액은 별제권의 기초인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민 334, 360 참조). 따라서 파산선고 후의 이자처럼 후순위청구권으로 되는 것(채회파 446① i)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담보물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파산관재인과 통상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며, 파산선고 시에 계속하고 있는 임의경매절차는 별제권이 되는 담보물권에 의한 것에 한하여 그대로 속행된다.

별제권도 파산채권과 같이 반드시 신고·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으나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판례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당연히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파산법』 제201조 제2항(현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2항)은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배당받기 위해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별제권도 파산채권과 같이 반드시 신고·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12.10. 96다19840)라고 판시함으로써 부정하고 있다.

나) 파산관재인의 환가와외의 관계

별제권자가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는 때는 그 취지 및 채권액을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하며(채회파 313 ① v 참조),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목적인 재산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는 이에 응해야 하고 또한 파산관재인이



그것을 평가하려고 할 때에는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채회파 490). 또 파산관재인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여 목적물을 환수할 수 있다(채회파 492 x iv 참조).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때는 파산관재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가할 수 있고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채회파 497①). 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의 담보물권이 붙어 있는 채로 목적물을 임의매각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으로서 이 방법에 의하든 또는 별제권자에게 적당한 가격으로 매입하게 해 그 매각대가와 피담보채권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든 선택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민사집행법』이 규정하는 방법으로 환가하는 경우 별제권자는 그 환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게 되겠지만,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때는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치해야 하며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속한다(채회파 497②).

별제권자가 법정의 방법 외의 특별한 처분방법(예를 들면, 임의매각, 목적물을 평가액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 등)으로 별제권의 목적물을 처분하는 권리를 가지는 때는 이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가 그 처분할 기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별제권자가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처분 권능을 잃게 되며 파산관재인이 환가할 수 있게 된다(채회파 498).

(2)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부족액 책임주의)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을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즉 부족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회파 413). 이는 별제권을 가진 채권자가 별제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그 피담보채권 전액에 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와 함께 파산재단으로부터 비례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면 한 개의 채권을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규정하게 된 것으로, 무담보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반의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을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340조 제1항 제370조와 같은 취지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별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책임주의를 ‘부족액책임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액책임주의는 별제권의 대상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의 대상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때에는 그 재산은 더 이상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제권의 대상 목적물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그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비례적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완전히 만족을 받을 수 있는 한, 별도로 파산채권자로서 신고해 파산절차에 참가할 필요는 없지만, 부족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으로서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채권액, 별제권의 목적 및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예정부족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채회파 447②). 이 경우 채권조사는 채권액 및 예정부족액에 관하여 행한다(채회파 450 참조).

채권조사의 결과 부족액이 확정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이고 배당과의 관계에서는, 각 중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안에 목적물의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그 처분에 의해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소명하지 않은 때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채회파 512②). 또한 이 증명과 소명을 한 때에도 목적물의 처분

종료에 의한 잔액이 확정되는 때까지는 배당액은 임치되며(채회파 519iii), 최후의 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안에 처분을 종료해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하지 않은 때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채회파 525). 또한 이전에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를 위하여 임치한 금액도 이를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으로 돌려진다(채회파 526).

4. 준별제권자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즉 자유재산)상에 담보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그 담보권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족액책임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채회파 414①). 또 채무자가 다시 한 번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인 제2파산의 경우에 제1파산에 관하여 파산채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파산채권자를 준별제권자라고 하며 그 파산채권의 신고, 조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등에 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채회파 414②).

Ⅲ. 재단채권

1. 재단채권의 의의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재단채권이라 한다. 재단채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후에 생긴 채권으로서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비용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그 외의 채권이라도 그 성질상 또는 공평의 요구에서 파산채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법률상 특히 재단채권으로 취급된다.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채권인 점에서는 파산채권과 같지만,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후에 생긴 채권인 점에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거한 채권인 파산채권과 구분된다. 또한 파산채권에 우선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수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채권과 다르다.

2. 재단채권의 범위

재단채권의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에 열거된 것(일반재단채권)과 그 외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진 것(특별재단채권)이 있으며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 ②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후순위파산채권(채회파 446)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 ③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 ④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 ⑤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 ⑥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 ⑦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상의 채무를 파산관재인이 이행하는 경우(채회파 335①)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 ⑧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때까지 생긴 청구권
- ⑨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 ⑩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⑪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 ⑫ 파산관재인이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의 가액반환 청구권(채회파 337②)
- 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 또는 파산관재인이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채회파 335①)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청구권(채회파 347②)
- ⑭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해진 것으로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을 파산관재인이 속행시킨 경우의 집행비용(채회파 348②)
- ⑮ 파산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현존이익 반환청구권(채회파 398①)
- ⑯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 이익을 주장한 파산채권자가 그 이익의 한도에서 가지는 소송비용의 상환청구권(채회파 469)
- ⑰ 파산관재인이 부담 있는 유증의 이행을 받은 때에 그 이행자가 유증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 안에서 가지는 부담의 이익을 받을 청구권(채회파 474)
- ⑱ 파산선고에 이르기 전에 회생절차가 선행돼 실패하고 결국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와 같은 선행절차를 위하여 생긴 채권 및 절차비용(채회파 6④, 7)

### 3. 재단채권의 변제

#### (1)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채회파 478). 그러나 각 회의 배당에 있어서 배당률 또는 배당액의 통지를 하기 전에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않은 재단채권자는 각 배당에서 배당할 금액으로써 변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채회파 534) 그 한도에서 우선권을 잃게 된다. 다만 계속하여 그 후에 중간배당 또는 최후의 배당이 있을 때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또 파산폐지 또는 파산취소의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이의가 있으면 재단채권자를 위해 공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채회파 325, 547).

#### (2) 수시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된다(채회파 475). 따라서 채권의 신고, 조사, 확정, 배당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변제된다. 재단채권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청구하면 되고 만약 파산관재인이 이것을 승인(채회파 492 x iii 참조)하지 않을 때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단채권의 임의변제가 없을 경우 파산재단 소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소극설과 적극설이 대립하고 있지만 적극설이 타당하다.

(3)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위와 같이 재단채권은 수시로 변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한다(채회파 477①본).

재단채권 상호 간의 변제순위는 다음과 같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체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순위에 불구하고 평등한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근로자임금우선특권(근기 37), 압류조세우선징수의 원칙(국기 36①, 지세 34①), 당해세우선징수의 원칙(국기 35①iii, 국기령 18①, 지세 31②iii, 지세령 14의4) 등은 여기에서의 재단채권 상호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단채권 평등의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첫째, 유치권·질권·저당권 및 전세권이 붙어 있는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채회파 477①단).

둘째, 일반의 재단채권에 속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채회파 477②).

셋째, 비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동법 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 중 제1호와 제3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내의 공익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재단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들 재단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넷째, 둘째 및 셋째와 같은 취지에서 비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특별



한 재단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재단채권은 둘째 및 셋째와 동일한 변제순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됨으로써 채권액의 비율에 따른 변제를 해야 할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제를 일시 정지하고 미지급 재단채권의 일람표를 작성하여 비율에 따른 변제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에 의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단채권자가 억지로 강제집행을 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집 44)로 이것을 저지할 수 있다.

채권액의 비율에 따른 변제를 해야 할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일부의 재단채권자에 대하여 전액 변제를 한 때는 다른 재단채권자는 변제받은 재단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에 따른 변제액을 넘는 액에 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또한 파산관재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채회파 361②)을 취득한다고 본다. 그리고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특히 파산자 자신의 채무인 성질을 가지는 재단채권(채회파 473vii, viii 등) 이 외에는 파산종료 후에도 파산자에게 그 잔액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7호, 제474조의 재단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거나 기한미도래의 것도 있으므로 파산채권의 현재화 및 금전화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 그것이 무이자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이면 중간이자에 상당하는 액은 비율에 따른 변제액 산정 시 공제된다(채회파 478). **금융**

신 간 안 내

**이기는 습관 2**  
**평균의 합정을 뛰어넘어라**

김진동 저 / 쌤앤파커스 / 296면 / 1만 2천 원



‘이기는 체질’을 가진 구성원들로 조직을 변신시켜라!

『이기는 습관 1』이 고객 중심의 집요한 실행력과 조직력으로 승부하는 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기는 습관 2』는 다분히 원칙적이고도 기본적인 ‘일의 방법론’을 알려주는 데 집중한다. 그저 ‘했다’는 위안으로 그치는 일,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놓지 못하는 전사용 전략, 엉뚱한 데 힘을 빼앗기는 실속 없는 마케팅 방법론 등을 나열하면서 ‘생각의 밑바닥’부터 확 뜯어고치라고 말한다.

이 책은 현장 직원들에게 주는 직접적인 메시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일이 아니라는 것, ‘이기는 일’에는 정확한 원칙과 방법론이 있다는 것, 무조건 연봉 많이 받고 전문가 대우 받기를 바라지 말고 맡겨진 임무와 시기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자기 발전의 원동력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 등을 ‘비즈니스 선배’ 입장에서 조곤조곤 꼬집어준다.

특히 현장에서 꼬치꼬치 이야기하기는 꺼끄럽지만, 조직 구성원들이 꼭 알아야 할 ‘일의 기본기와 원칙’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구성원 교육’에 갈등을 느끼는 경영자나 관리자들 입장에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총망라했다.